

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1. 9. 2. (금) 10:00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 목 차 】

1.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 면
2.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면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8. 24.
-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외 3인
- 회부일자: 2011. 8. 24.

2. 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를 군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3조: 적용 범위는 군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공사
- 나. 제4조: 군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여건을 감안 공사금액이 1억 원 이하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였음.
- 다. 제5조: 군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였음.
- 라. 제6조: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함
- 마. 제8조: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공사현장 방문하고 부실시공 등이 있을 시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일지를 작성 보관토록 규정.

- 바. 제9조: 군수는 기획감사실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함.
- 사. 제12조: 군수는 공사비 2억 원 이상 또는 공기가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 공사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함.
- 아. 제13조: 군수는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공사안내 표지판 적정게시, 군민 불편사항 등을 감시토록 함.
- 자. 제15조: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근거를 마련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3, 제33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2조의3, 제33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감사담당·법무통계담당), 건설교통과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를 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를 보다 견실하게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 ~ 제2조(목적, 용어의 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3조(적용범위)는 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3) 안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는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4) 안 제5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는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하여 시행자에게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는 조항으로 필요조항으로 검토됨.
- (5) 안 제6조~제8조(공사시행의 통보, 공사감독, 현장확인 및 시행)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읍·면에 공사시행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공사감독 방법 및 현장확인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6) 안 제9조~제11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접수, 부실공사 신고처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신고센터 설치, 신고·접수, 신고사항 처리방안을 명시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7) 안 제12조~제13조(예비 준공검사 설치해야 명예감독관 위촉)는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 실시 방법과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8) 안 제14조(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는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주변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을 명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9) 안 제15조~제16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공사실명제)는 부실공사 업체의 제재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공사실명제를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10) 안 제17조(실비변상)는 명예감독관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11)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7호 시행일 2011.10.1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15호 시행일 2012.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5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21, 2011.7.25>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6.18 대통령령 제22211호]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

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8]

○ 정보통신공사업법

[(타)일부개정 2010.4.12 법률 제1025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2>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3.29 대통령령 제22772호]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2011.08.04 법률 제11036호 시행일 2012.2.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4>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2.4 법률 제999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이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타)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19호 시행일 2011.11.25]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

제67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16에서 이동 <2010.12.13>]

[전문개정 2010.12.13]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85호]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 건설기술관리법

[(타)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19호 시행일 2011.11.25]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개정 2009.1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2009.12.29>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7.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9.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5조(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8. 24.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8. 24.

2. 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신설·확대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 우리 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급식경비”를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 정의하고,
-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및 개선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급식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규정함

마. 학교급식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함

바. 학교급식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촉하되,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을 하며,
- 급식지원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도·감독 및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군수는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고,
-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카.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5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축산법」 제35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나. 예산조치: 2011년도 예산확보(2억 4천만 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규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6. 14.~7. 04.) 결과: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안정성이 확보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신설·확대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제2조(목적, 정의)는 무상급식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조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3조(군수의 책무)는 무상급식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망라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3) 안 제4조~제7조(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방법, 지원 받으려는 자의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안 제8조~제12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소위원회 구성, 수당 등을 명시한 조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됨.
- (5) 안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안 제14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는 군수의 급식지원센터의 지도·감독 사항과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 항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7)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11. 1.24] [법률 제10386호, 2010. 7.23,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6,65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

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

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물"
-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調理)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 (5) 내용량
-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1) 쇠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3) 닭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4) 계란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 (5)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 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학교 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39호, 2011. 5.19,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48~52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③ 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22호, 2010. 2. 4,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0~2091

- 제5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수관리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

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0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5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3.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15조의2(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15조의3(우수관리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상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15조의4(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표시하려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할 것.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할 수 있다.

2.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려면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산지, 품목, 중량·개수, 등급, 생산자(작목반명) 및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할 것

3. 간판이나 차량에 표시하려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를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에 따르되, 인증기준에 따른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제15조의5(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5조제7항 단서에 따른 품목의 특성상 다르게 적용할 유효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15조의6(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①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관리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갱신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15조의7(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623호, 2009. 4. 1,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2-500-2126~2127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11.26, 타법개정]

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9.12.14>

③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

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2009.12.14>

제9조(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1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 「축산법」

[시행 2010.11.26] [법률 제10310호, 2010. 5.25,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02-500-2050~2051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5호, 2011. 3. 4, 일부개정]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란집하업등록자"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돼지·닭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④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채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02-500-2102~3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 및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⑪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⑫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 5.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 [전문개정 2010.5.25]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농림수산물식품부(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02-500-2369~237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12.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삭제 <2010.2.4>
14.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방사능·항생물질·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5. "병해충"이란 수산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53호, 2011. 3. 9,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식품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02-500-1915~19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0.1.25, 2011.3.9>

1. "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

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기준·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③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방법·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⑤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와 기준,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 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와 이를 판매·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유기가공식품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38호, 2011. 5.19,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과), 02-2100-655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3.24>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2-2023-89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문개정 2007.10.17]